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이 재 명 

2026년 4월 7일

국 무 총 리 김 민 석

국 무 위 원
법 무 부 장 관 정 성 호

●대통령령 제36239호

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

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봉급 지급에 관한 적용례)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봉급부터 적용한다.

[별표 2]

검사의 봉급표(제7조 관련)

(월지급액, 단위: 원)

직명	호봉	봉급액
검찰총장		9,618,800
검찰총장 외의 검사	17	9,604,600
	16	9,586,300
	15	9,042,400
	14	8,501,100
	13	8,015,800
	12	7,606,000
	11	7,408,400
	10	7,176,100
	9	6,787,700
	8	6,325,100
	7	5,926,200
	6	5,551,500
	5	5,190,400
	4	4,826,500
	3	4,475,100
	2	4,124,400
1	3,660,300	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「공무원보수규정」의 개정으로 공무원의 봉급 등이 총 보수의 1,000분의 35만큼 인상·조정됨에 따라, 이를 검사의 봉급에 반영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